

15. 1997年度 事業內 職業訓練 比率

勞働部 告示 第1996-46號 1996. 12. 23

1. 직업훈련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사업내직업훈련비율을 별지와 같이 책정 고시합니다.
2. 위 훈련비율의 적용을 위한 사업의 종류 및 세목별 내용은 별표의 사업종류 예시표와 같습니다.
3. 이 고시는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업훈련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의무사업주(이하 “사업주”라고 한다)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업내 직업훈련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 내용 및 범위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의 분류원칙) ①이 고시의 예시표의 사업분류는 적용사업장의 주

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어비스의 주된 내용에 의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 것이나, 최종제품에 의한 분류가 불명확한 것은 그 작업공정등 중간과정을 기초로 하여 분류한 것이다.

②사업의 종류는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6개 산업분류로 대분류하고 제1항의 분류원칙에 따라, 이를 32개의 사업종류로 분류하였으며, 각 사업종류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종류 예시표로 해당사업의 내용을 예시하였다.

제3조(사업종류 내용예시) 사업종류 내용 예시에 기재된 사업의 주된 최종제품 및 제공되는 서어비스 등은 당해 사업 내용에 해당 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대표적인 예를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내용예시에 누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훈련비율의 적용원칙) 훈련비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고시의 예시표에 의한 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하여 고시된 훈련비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는 하나의 훈련비율을 적용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가 분리된 2 이상의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 분공장 등)을 경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 사업장에서 이 고시에 의한 사업종류 분류상 동일사업을 경영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의 적용사업으로 하여 각 사업장의 임금총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해당 훈련비율을 적용한다.
3. 하나의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 고시에 의한 사업종류 분류상 2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의 종류로 분류하여 해당 훈련비율을 적용한다.
4.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가 분리된 2 이상의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 분공장 등)을 경영하면서 이 고시에 의한 사업종류 분류상 2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을 때에는 각각의 해당비율을 적용하되, 본사, 지점(영업부 포함)등 공통업무 종사자의 임금은 각 사업별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5. 하나의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 또는

장소가 분리된 사업장에서 법 제2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과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을 때에는 적용대상사업만을 적용하되, 공통업무 종사자의 임금은 각 사업별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6. 제조업체에서 물품의 제조생산과 함께 동 생산품을 이용하여 설치공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의 훈련비율을 적용한다.
7. 건설업을 제외한 기업규모별 훈련비율은 전년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대규모기업, 중규모기업으로 분류하여 해당규모별로 적용한다. 이 경우 대규모 기업이란 그 사업주 소속 전년도 상시근로자수의 총 수가 3,000인 이상인 사업, 중규모 기업이란 그 사업주 소속 전년도 상시근로자의 총 수가 3,000인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8. 건설업의 경우 기업규모별 훈련비율은 전년도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하여 2,208억4천5백만원 이상, 2,208억4천5백만원 미만 736억1천5백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여 각각 대규모기업, 중규모기업의 훈련비율을 적용한다.

제5조(예시 누락사업에 대한 적용방침)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실시의무사업으로서 이 사업종류 예시내용에 누락된 사업에 대

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책정된 훈련비율을 적용한다.

1. 해당사업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어비스의 내용 등에 의하여 이 예시상의 사업종류 구분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그 사업종류를 결정하여 해당 훈련비율을 적용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로서 지방노동관서장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해당 사업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제6조(시행기간) 이 예시표는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997년도 사업내직업훈련비율

(단위 : 1/1000)

사업종류	중규모기업	대규모기업
10. 석탄광업	0.30	0.42
15. 음식료품제조업	4.68	6.38
16. 담배제조업	2.69	4.04
17. 섬유제품제조업	4.22	5.76
18.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4.67	6.37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1.73	2.59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4.01	7.15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37	7.52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53	7.74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2.30	4.31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3.90	6.13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4.52	6.33
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4.85	7.28
27. 제1차 금속산업	6.98	10.48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장비 제외)	7.49	10.49
29. 달리분류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00	13.50

사 업 종 류	중규모기업	대규모기업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업	12.31	17.23
31. 달리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4.68	6.37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4.91	6.68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6.58	9.21
35. 기타운송장비제조업	5.55	7.95
36. 가구 및 기타제조업	6.46	7.82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2.00	3.01
41. 수도사업	2.36	4.45
45. 종합건설업	6.85	10.13
46. 전문건설업	6.05	8.47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0.81	1.13
61. 수상운송업	2.75	5.18
62. 항공운송업	0.97	1.49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1.41	2.07
64. 통신업	4.14	6.20
93. 기타서비스업	11.93	16.70

주택회보